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주)커리어스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주)커리어스타

□ 지원대상 및 요건(기업)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단,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하며, 입증 자료 제출 필수(해당조건 별첨)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1.1.~12.31.), 매출액이 높은 년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23년 중 채용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및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여야 함
단,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기업 내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지원대상 및 요건(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 미가입,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F-5, F-6은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단, 사업 참여 직전 3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원이 가능
- 청년의 채용일은 **23.1.1.부터 23.12.31. 이내**여야 한다.
-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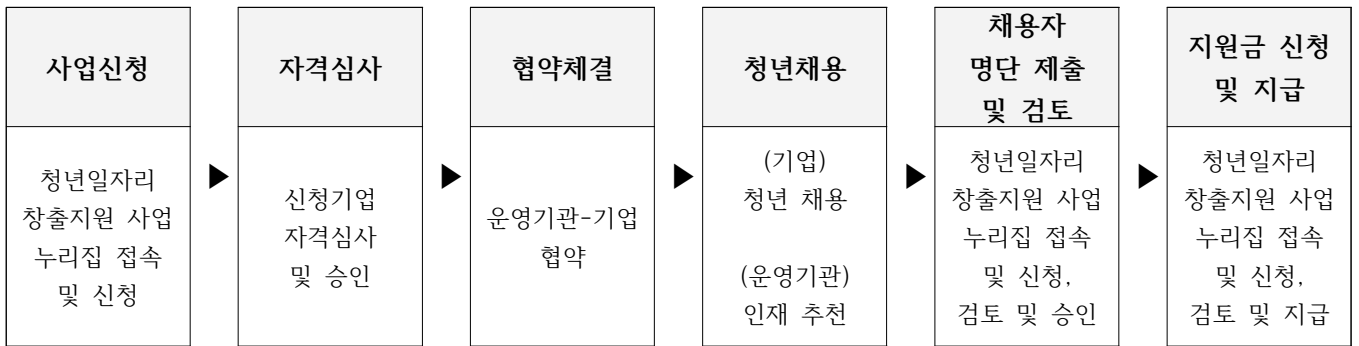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
- * 지원한도 계산 방식 : (비수도권)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지원대상 기채용자 제외) (예시 :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 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절차



-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 (주)커리어스타 지정**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주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신청기업 자격여부 등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 결정 및 안내**
- 3)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협약' 체결**
- 4)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요건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적격자 채용을 위해
알선 지원
- 5)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은 적격 여부 검토 후 10일 이내 결정 및 안내**
 *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근로계약서 사본',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 7)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운영기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8)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

□ 신청문의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주)커리어스타
- **문의** : ☎ 053-384-8890 / 010-5645-8890, E-mail cs3848890@daum.net
 - 사업장 소재지 : 대구(수성구, 중구, 북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①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플」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②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③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